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편집부

1. 축산법 개정안

가. 계열화 생산 조문의 신설 사유

- 삭제 당시 전 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의 분위기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그 조문이 없어지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본다.
 - 현행 농안법 제6조(계약생산)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게 계약금의 대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 의거 가축과 축산물의 경우도 생산계약 또는 출하 계약을 할 수 있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축산업에 관한 특별법인 축산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축발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계약, 출하계약에 관한 것은 농안법 규정을 준용하기보다 축산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생산계약, 출하계약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에서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계열화 생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문 명칭을 “계열화 생산”이라고 하고,
 - 일반적으로 “계열화”란 가축의 생산과정을 전후한 여러 단계, 즉 생산요소의 공급 단계, 사육단계, 도축·가공단계, 유통단계 중 두 가지 이상의 단계가 동일 경영 관리 하에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생산 및 유통의 계열화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통합 방법은 계약에 의한 통합, 소유에 의한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따라서 농안법 제6조의 개념을 축산법에 준용한다는 것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9. 10. 29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축산업자를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정의한 것과 같이 동 2항에서도 축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축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및 축산물의 계열화 생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은 도축·가공되며 축산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축산물의 생산, 유통 관련하여 계열화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축 및 축산물의 계열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계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본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쟁력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에 자기 기호에 맞는 축산물의 구매를 원한다.
-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종축·사료·사육·도축·가공·수송·유통 전 단계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느 한 단계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축산물의 안전성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관리 체계 하에서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축을 구입했는데 사육을 잘못하면 최종적으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잘 키운 가축이라도 도축·가공단계에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없다. 따라서 단일관리 체계 하에서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 소비자가 원하는 스펙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스펙의 구체화, 부분육의 정형 매뉴얼, 도축 매뉴얼, 사육 매뉴얼, 동일한 사료 배합비, 동일한 종축 등 모든 과정이 하나의 체계화 속에 들어와야 한다.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은 이미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스펙을 한국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계열화 할 수밖에 없다.

○ 사료 가격, 환율, 국제유가 등의 변동과 소비 수요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축산물 가격으로 인한 축산업의 불안정한 부가가치를 각 단계가 함께 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양축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계열화 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 축종의 계열화가 요망된다.

나. 조문 개정안

○ 계열화의 의의

“가축의 생산 과정을 전후한 모든 단계, 즉 생산요소의 공급 단계(사료·원종·종축), 사육단계, 도축·가공단계, 수송단계, 판매 단계 중 2가지 이상의 단계가

동일 경영 관리 하에서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 계약 당사자는 계열화 사업의 각 단계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 폐지된 조문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① 축산업협동조합 ② 허가 받은 축산업자 ③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규정된 바가 없지만 사료업, 도축·가공업, 축산물 유통업, 동물 약품업, 축산물 요식업을 축산업의 관련 산업이라고 보고 이 업을 영위하는 자를 계약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동물 약품업이나 축산물요식업, 축산물 유통업자가 계열화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어느 단계의 영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단계의 업자들이 균등히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쟁력이 없거나, 계열화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일정영업자만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지원대상자도 공정하게 어느 단계에 있는 영업자라도 지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직 사육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삭제된 조문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계약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보고 장관이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농안법 규정과 같이 계약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농안법 규정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계약체결 후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민법에 의한 소송 문제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토론회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를 통해서 쌍방(농가, 업체)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산업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 계열주체와 육계 농가와의 계약에 있어서 농가는 열위에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농가는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열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쉽다. 따라서 약자인 농가 보호를 위해서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반법인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 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육계 관련 특수한 경우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법원이 이 중재를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법원에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셋째 중재인 선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농가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공정한 중재자가 선임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타 산업에서도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즉,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 중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한국 저작권 위원회법 제112조의 2(위원회의 구성),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 사업 분쟁 조정 협의회의 설치). 다섯째 미국의 packers and Stockyards Act 법에 중재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section 210, Arbitration).

-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농식품부의 고시에 의하는 것이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와 동시에 계열화 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동 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환류시키고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가 협의체”는 법에 규정하는 것 보다는 정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활용토록 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에 대해서는 “농가 협의체”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축산계열화업자는 가축 사육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가 어긋나는 처사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축산계열화업자들의 사육

업 병행이 오히려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 따라서 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표 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다른 측면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계열화사업자는 대체로 농가에 비해서 우

<표 1> 농안법·축산법 중 삭제된 조항·신설조문(1)

농안법	축산법 중 삭제된 조항	신설 조문
<p>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01.03, 2008.02.29></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4. 12. 31, 2008. 02. 29></p>	<p>(2)축산법[전문개정 1993.06.11 법률 제 4557호]</p> <p>제29조(가축의 계열화 생산)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자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에 의한 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협동조합 2. 제27조제1항의 단서의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3.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p>제27조의2(가축 및 축산물의 계열화 생산)</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축업, 사료업, 사육업, 부화업, 도축 가공업, 축산물 유통업, 동물 약품업, 축산물 요식업을 영위 하는 자 간의 계약 사육 및 계약 출하를 장려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 생산 및 계약 출하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와 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준비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농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체결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미국의 경우도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공 및 저장업자법(Packers and Stockyard Act)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미국 농무성의 곡물검사, 가공장 및 가축 시장에서 계열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2009. 12. 3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가금회사가 사육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하기 내용이 포함된 가금사육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육 향상 계획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 서면 계약 종료 통보 조항
 -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자가 지정한 사람과의 사육 조건의 협의를 허용
 - 시행일은 2010. 01. 04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육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용어의 정의에 계열화사업자, 사육농가 등을 정의하고 계약서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경우를 벤치 마킹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거론되고 있는 표준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제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법 개정을 위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다. 축산법 중 유통 협약 관련 조항

○ 계육의 유통협약의 필요성

- 계육의 공급과잉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소비 수요의 감축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경우 계육 관련 업계(원종, 종계, 부화, 사육, 도계, 가공 등)의 타격이 너무 심각하고,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WTO 규정과 짧은 계육 유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시장 기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육계의 생산조정이나 계육의 출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제1항(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

〈표 2〉 농안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자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자유통인, 저장업자, 도축·가공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의거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정 거래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육계의 생산조정이나 계육의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 따라서 축산법이 유통협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기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 없이 닭고기의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축산법에 이와 같은 조항이 없으면 원래 변질되기 쉬운 닭고기의 수급안정이 어렵게 될 것이다.
- 일부에서는 축산법은 계육뿐만 아니라 전 축산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축종 관련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부패,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로

한정하면 계육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축종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육계 상태로 있을 때 사육기간을 조정하여 육계의 생산조정이 가능하고 도계된 계육의 출하조정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 "유통협약"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를 개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축산법 제27조 3(유통협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가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고 반드시 도축, 가공되어 축산물, 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의 형태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므로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은 가축의 생산자와 축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산물의 생산자인 도축, 가공업자가 개입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제10조에 도축, 가공업자를 추가하여 명실공히 농수산물의 유통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의 유통협약은 농산물의 경우에만 체결되었기 때문에 축산물의 경우는 고려치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제10조의 조문을 <표 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유통협약 사업 시행지침서”의 유통협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도축·가공업자의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며 그 외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육계는 사육자 조합은 없고 회사 형태의 계열화 업체 중심으로 계열화 사업의 비중이 85~90%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협동조합의 형태는 없고 회사 형태로 되어있고 이들이 계열화 생산자이면서 양계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육협회와 양계협회를 생산자 단체에 포함시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축산법 제27조의 3(유통협약 및 유통명

령) 신설

- 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축산법 제27조의 3항을 계열화 생산과 연계하여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안법 제10조의 2~5항을 도입하여 안을 신설할 수 있다.

2. 계육 자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검토

가. 추진 경과

- 축산자조금은 오랫동안 양축가의 숙원 사항이었는데 양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등을 중심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01년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로 드디어 법제화되었다. 자조금이 준조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자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였다. 그 후 “축산 자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몇 가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 그러나 계육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에 대의원 135명을 선출한 이후 대의원 정족수 미달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대의원 측과의 이견과 자조금 납부대상 확정 등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지지부진

하였다.

나. 홍보실적

- (사)한국계육협회는 현행 자조금법 이전인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68억 6백만원을 홍보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대부분 소비홍보에 쓰여졌다.
-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보조 없이 34억 7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현행 자조금법에 의해 보조를 받으면서 집행한 홍보비는 보조 사업비를 포함하여 33억2천4백만원으로 이중 약 49.5%인 16억4천7백만원이 보조금이었다.

다. 검토대상

- 육계 계열화 생산의 경우 닭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사육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어 자조금 납부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안)에서는 사육하는 자를 자조금 납부 대상자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육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열화 생산을 하

는 경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동법 제2조(정의)에서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자조금의 재원)에서 자조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으로 조성되고 의무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산업자 중에서 계열화 농가는 사육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자조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고, 일부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 스스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또한 양계협회에서는 농가만이 납부하는 형태로 자조금을 조성, 운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거출금이 저조할 것은 분명하다. 곧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수당 거출액을 수정하게 되면 신법에 의한 거출액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경우 계열화 사업자가 자조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자조금을 부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법에 의하면 닭의 소유권이 없는 계열화 농가는 자조금을 낼 의무가 없음에서도 대의원 대회와 관리위원회에서 자조금 운영에 대한 것을 좌우하게 된다. 따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라서 법률적 모순이 생기게 된다.

- 결론적으로 현행법 자체를 보면 농가는 자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자조금 대의 원회에서는 수당 거출금 책정·운용을 맡게 된다. 이것은 따라서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 현행법보다도 국회 제출된 개정안(2009. 10. 29일자)을 근거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개정안에 의하면 동업 제2조(정의)에서 축산업자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 즉 양육가와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즉 계란생산자, 꿀생산자, 우유생산자 뿐만 아니라 가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축장, 도계장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도 축산업자에 포함되며 한우위탁사육을 시키고 있는 축협도 축산업자에 포함된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거출금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계열사육 농가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조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농가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수당

거출금액 사용 등에 대하여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닭의 소유권이 없는 농가가 자조금 운용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계열화 사업자는 실제로 자조금을 많이 납부하면서도 자조금 운용에서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개정안 8조 제5항 제1호에는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 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토록 신설하였으나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관련 규정과 배치된다. 그 이유는 유권자는 기권의 의사표시로 선거에 불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H사, D사처럼 육계가 사육농가의 소유로 되어있으면 자조금 의무납부자는 농가가 된다.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농가는 양도담보계약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 육계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육계의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 또한 대의원이 무투표당선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당선된 대의원 중에서

선발된 관리위원이 수당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농가의 의사표시 없이 준조세에 해당되는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무투표 당선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개정법안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 ① 계열농가와 계열 주체간의 자조금 분담 방법
- ② 대의원회, 관리위원회에 계열사의 참여 정도
- ③ 축종별 자조금의 차별화 여부
- ④ 계열화 비율이 높은 축종의 경우에는 임의 자조금을 운용하는 방안
- ⑤ 2009. 11월 이후 대의원회 운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3. 계사 시설의 현대화

가. 계사 시설 현황

- 계사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질병예방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병아리와 사료에 대한 사육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
- 현재 50% 가까운 농장이 하우스 형 계사

로 단열, 환기 등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쟁국 경우 이미 계사가 모두 A, B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우 50% 가까이가 하우스형 보온덮개 계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우스형 계사를 무창계사로 전환해야 한다.

- 본 연구조사과정 중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하우스형 보온 덮개 계사가 27%였으며 A사가 계열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48%가 보온 덮개형 계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육 환경에서는 전염성 기관지염(IB), 감보로(IBD), 뉴캐슬(ND) 대장균 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한 재발되고, 과거에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IBH, CAV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사육농가는 차단방역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외부인, 외부 차량 등이 농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A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계사형태에 따라서 사육원가가 <표 3>에서 보는 바와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표 3〉 계사 형태별 비율 및 생산성 비교

구분	계사 형태	보유 비율(%)		사육 원가	차이 (B기준)
		KLEI	A업체		
A형	환경조절식	43	25	780	-50
B형	개방식	30	27	830	0
C형	하우스형 보온덮개(신)	27	48	880	50
D형	하우스형 보온덮개(구)			1,000	170

같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즉 A형 계사의 경우 수당 사육원가가 780원, B형의 경우 830원, C형은 880원, D형은 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A형을 기준으로 하면 보온덮개 C형은 12.3%, D형은 28%의 사육비가 더 든다. 이 경우 사육원가는 병아리, 사료, 생계운송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나. 문제점

- 상기와 같은 계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농협이 제작한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5만수의 육계 사육을 위한 시설비가 약 8억6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급이 시설비가 일반적으로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 신규 진입하는 경우는 힘들고 기존 계육농가가 시설현대화를 희망할 경우 2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야 하는데 이 경우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용자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육계농가가 보다 용이하게 용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 대책

- 첫째로 육계농가가 담보가 없더라도 농가의 사육능력과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자금을 용자해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 둘째 육계농가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담보확보가 필요한데 계열화 사업자가 보증을 해주고 반면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육계농가가 희망하면 계열화 사업자에 강제적으로 얽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 현재 담보물의 평가액의 40% 정도 용자받을 수 있는 것을 60% 정도 인상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표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m ²)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계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돈	500천원/m ²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양계	산란계	20백만원	1,400백만원	1,750백만원
	육계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오리	102천원/m ²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농	185천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표 5〉 2009년 10월 종계DB조사자료 총괄표

(단위 : 수)

구분	육용종계		준육용종계		산란종계	
육성계	2,396,500		199,900		219,048	
성계	25~64주령	3,399,961	25~68주령	177,168	21~78주령	397,598
	65주령 이상	166,021	69주령 이상	56,300	79주령 이상	-
	소계	3,565,982	소계	233,468	소계	397,598
합계	5,962,482		433,368		616,646	

※육성계 : 육용, 준육용(1~24주령), 산란(1~20주령)의 종계

※육용종계(65주) 및 준육용종계(69주)에 대한 경제주령이상 종계에는 환우계가 포함될 수 있음.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것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농협의 경우 계사시설의 경우만 특별히 이와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다만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도액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304천원/m² 수준을 현실화하여 평당 120만원으로 인상하면 현재 평당 100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 증액되어 육계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세번째 안으로는 담보가 없을 경우 농신보가 보증을 해 주는데 이 경우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증을 얻기가 어렵다. 농신보 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농신보에서 많은 돈을 손실처리하고 있지만 그 경우는 농가가 융자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농신보에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와는 다르다.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표 6〉 조사 항목

원종계	종계(육용종계, 준육용종계, 산란계)	부화장
1. 주령별 생존수		
2. 계군 산란율	1. 분양수	1. 입란수
3. 입란수	2. 사육수수	2. 분양수
4. 분양수	3. 평균 생존율	3. 수정률
5. 분양 농가명	4. 평균 산란율	4. 부화율
주소, 전화번호		

4. 육계 통계의 정립

가. 기존 육계 관련 통계

- 통계청이 육계 농가수, 사육수수, 가구당 마리수, 규모별 농가수 및 사육수수, 시도별 사육수수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육계 생산비, 산지가격, 수익성(조수입, 소득, 순이익)은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다.
- 양계협회에서는 육용종계, 준육용 종계(토종닭), 산란종계를 육성계, 성계로 구분하여 사육수수를 매월 조사 발표하고 육용종계에 대해서는 주령별로 분양수, 사육수수, 평균생존율, 평균산란율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1월 발표한 자료는 〈표 5〉와 같다.

나. 기초통계자료의 문제점

-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오랫동안 유통시킬 수도 없다. 사육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해서는 적기에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할 때 시장이 안정되고 사육 농가와 계열사도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월보는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 단위 통계자료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주단위로 통계자료를 수집 발표하고 있다.
- 양계협회에서는 종계자료만 수집발표하고 원종계와 부화장관련 통계자료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육계 관련 자료는 원종계, 종계 부화장 관련 통계 자료가 함께

발표되어야 사육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생산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고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정책수립에도 주보가 적절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종계관련 자료는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하여 함께 발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다. 육계 통계 정보 시스템 수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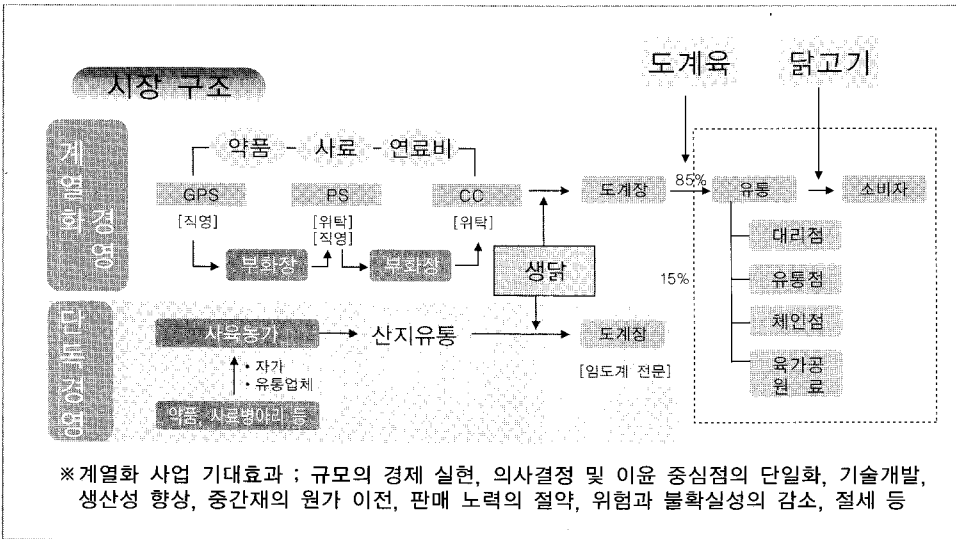
- 육계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기본 통계자료의 수집 분산이다. 통계 자료를 수집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원종계장, 종계장, 부화장 운영자가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영상의 비밀유지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축산법을 개정하여 경영자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현재는 종계 Data만을 수집분산하고 있는데 향후는 원종계, 부화장에서도 기본 통계 자료를 주단위로 수집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즉, <표 6>과 같이 원종계장에서는 주령별 생존수, 산란율, 입란수, 분양수, 분양 농가명(주소, 전화번호)를 조사 발표하고, 부화장에서는 주간 입란수, 분양수, 수정률, 부화율을 수집 분산시키며, 종계장에서는 현재의 주간단위 사집, 월간 분산을 주간단위 수집 분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보다 유익한 것이다.
- 이와 같은 기본통계 자료를 수집 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함께 주관기관을 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통계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농식품부의 품관원에서 수집분산 시키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 종계 Data Base를 운영하고 있는 양계협회가 수집 분산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분석 등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이다.
- 이 경우 소요자금문제는 선진국의 경우와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그림 1〉 한국 육계 산업의 시장 구조



시장이나 도매 회사가 없고 계열화 사업자와 유통업체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다. 도계장에서 계열사의 대리점, 유통점, 체인점, 육가공공장 등으로 유통되

같이 정부대행업무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어떤 형태라도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5. 도계육 유통 개선

가. 유통 실태

- 도계육은 약 87% 수준이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 유통되고 있으나 도매유통은 다른 축종에 비해 낙후된 실정이다. 즉 도매

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도계육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생닭가격의 영향이 크며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 2009년 10월에 B2B를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on-line과 off-line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off-line의 도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가격 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재기되고 있고 가격 결정구조 개선이 요망된다. 현재의 육계관련 가격은 〈그림 1〉과 같은 시장구조에서 결정된다.

- 상기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여러 기관에서 수집 발표하고 있는 바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 계열주체가 납품하는 가격
 - 계열주체는 대리점, 대형할인점, 단체급식기관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격은 계열주체마다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시장교섭능력에 따라 가격수준이 결정되는데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포되지는 않고 있다. 가격결정에는 수급실태와 시장교섭능력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로 생계가격이 많은 참조가 되고 있다. 계열주체는 생계가격, 운반비, 도계비용, 지육률, 이윤 등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에 임하게 되나 대개의 경우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어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계비용은 크기별로 상이하나 15~16년 전 가격과 변함이 없어 어려움이 큰 것이다.
 - 도계육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공산품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통업자들이 “갑”의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있

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생산자가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계육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 소의 경우 송아지가격안정제도가 있고 우유가격도 낙농진흥회 가입 낙농가의 원유가격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쌀은 목표 가격제도를 통해 쌀값이 보장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육계가격을 시장에 맡겨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새로운 도매가격 결정 시스템 방안

〈농안법에 의한 육계 도매시장 설립〉

- 농축수산물의 도매는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선 등)에 의하여 개설된 중앙도매시장, 또는 동법 제43조(공판장의 개선)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설립한 공판장, 동법 제47조(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에 의한 민간인이 개설하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소, 돼지는 동법에 의한 축산물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도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나 계육의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법에 의한 계육도매시장 설립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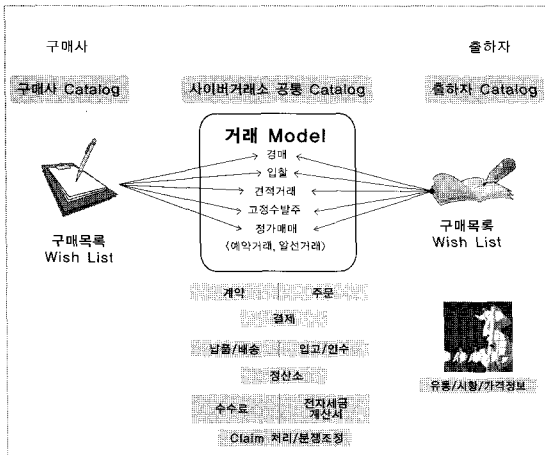
- 이 경우 동법 제17조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판장의 협동조합이 민영도매시장의 경우 민간인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열사업자가 관심이 있다면 지자체장, 농협중앙회장, 지역축협조합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육협회 주관으로 회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계육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자, 유통업자, 대규모요식업자 등이 중도매인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도매거래 추세를 역행할 수 없을 것이다.
- 만약 계육도매시장이 성공하면 계육 도매가격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열화사업자, 계육사육농가, 대형할인점 등 소매업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계열화 업체나 사육농가도 출하처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만 계육을 도매시장까지 수송하여 거래하게 되면 신선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계육 도매회사 설립〉

- 세계적 추세가 도매시장거래가 쇠퇴하고 있으며 반면 물류센터, 즉 생산자와 소매점을 바로 연결시켜 주는 도매형 물류센터가 농수축산물거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계열사 중심으로 도매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선 100억원 규모로 빅 4 계열사가 시작해 본다면 유통업자들에 의한 거래와 계열사 간의 공급과잉 또는 부족시의 거래를 흡수할 수 있다면 수급의 일정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도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경우 기존 냉장시설을 임대하고 수도권 내에 또는 가락동 축산물공판장 후적지에 설립한다면 도매유통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계열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

〈그림 2〉 농축수산물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구조



다.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로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도매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면 협력 증진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비 계열사업자의 경우 도매시장 설립보다는 불리해지는 면이 있을 것이다. 도매회사의 경우도 도계육 수송과 저장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B2B 활성화 방안〉

- 농식품부는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로 하여금 농수축산물의 B2B거래를 주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육의 B2B거래를 계육협회와 협조하여 2009. 10. 28일부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개통과 함께 계육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 사이버거래소의 B2B거래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즉, 구매사와 출하사가 구매 목록을 만들어 사이버 거래소에 제출하면 경매, 입찰, 견적거래, 고정수발주, 정가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의 규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인터넷상거래가 이루어진다.
- 그동안 계육협회가 주관이 되어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계의 과부족물량이 외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될 경우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가격등락 요인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계육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 3.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회의는 물론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2009. 10. 28일 8개사가 B2B에 참여하게 되었다.
- 그 주요내용은 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생계 및 도계육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공급자 일방으로부터 0.35%를 징구하나 2009년말까지는 0%로 운영하게 된다.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정산소 이용 20일까지 무이자, 초과 30일
까지 연리 3%(30일 초과 18%)로 적용된
다. 구매사는 정산소 이용을 위하여 재무
제표 및 담보 제공(서울보증보험 포함, 신
용 보증서는 제외) 수준에 따라 별도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기대효과(회원사 모두가 참여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 발생시 짧은 시간 내에 보
완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정산소 이용
시 구매사에게 저리의 구매회전 자금 지
원을 통해 경영자금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하고, 판매사에는 신속한 판매대금(판·
구매사 모두 혜택,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
는 여건 조성)을 지급하는 것이다.
- 향후 추진 계획은 2009. 11월 중 가격·
수량 등록방법, 월단위 마감 및 결제일자
등을 가입회원사간에 협의 확정 후 본격
활용하게 될 것이다.
- 회원사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B2B사이버
시장의 상태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계
육의 도매거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신선
도 유지, 물류비 절약, 불합리한 외부 유
통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계육의
도매거래라고 볼 수 있다.

6. 사육계약 방식 개선

- 계육의 계열화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이다. 현재 계약에 의하면 계
육농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반면 계
열화 사업자들은 사육농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평
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농가
가 계열사에 종속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체로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계
약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사육 수수료 지급방식을 원자재 구매
방식으로 전환 ② 계열사의 주식을 농가
에 배분하는 방안 ③ 계육협동조합 결성
④ 개별 계약에 참고가 될 표준계약서 등
을 제안코자 한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계열화 사업자가 병아리,
사료,약품, 연료 등을 공급해 주고 농가
는 자기 계사에서 닭을 사육하여 업체에
공급해주는 방식과 계열사업자가 원자재
를 농가에 판매하고 농가는 자기 소유로
닭을 사육하여 계열사에 판매하되 양도담
보계약에 의하여 반드시 계열사에 판매하

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도 사실상은 첫 번째 경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 다만 농가의 사육결과에 대한 평가를 절대 평가나 상대평가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농가협의체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가 차이가 있다.
- 제2장에서 대표적 회사의 사육계약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원자재 구매방식

- H사와 D사의 계약방식을 좀 더 현실화하고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식의 구매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외상구매가 아닌 현금 구매를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병아리 가격과 사료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하며 원종계, 종계, 부화장관련 기본통계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여 각 사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열사업자와 농가간의 신뢰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또한 도계육의 유통활성화에 가격의 안정화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개사가 계약 맺은 전 농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희망에 따라 농가와 구매방식을 채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 이 경우 병아리 가격과 사료가격은 계열사업자가 농가에 제안하고 조정 후 합의하는 순서가 타당할 것으로 본다. 병아리 주령과 체중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사료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육계의 가격도 체중에 따라 계열사가 제안한 가격을 협의 결정하면 될 것이다. H사, D사와 같은 사후정산이 아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나. 주식 배분

- 계열농가는 계열사업자에 소속되어 있고 원자재를 다 받아 닭을 사육하여 납품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다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회사와 농가가 공존공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농가도 상당히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계약이 변경될 때는 수차에 걸쳐 협의하기도 한다. 그 점에도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식은 수준이하라고 볼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상호합의하에 추진된다면 계육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계열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농가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주가가격을 최저 액면가 최고 시세를 그 범위로 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농가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우리 사주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이렇게 농가가 주식을 갖게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명한 경영을 이해할 수 있고 회사 경영실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육수수료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회사측도 적절한 사육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많은 농가가 주식을 갖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발언권도 강화되어 농가의 의견을 회사운영에 반영할 수도 있게 되고 회사와의 공동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필요시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계열회사는 이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한 회사가 실행하여 그 효과가 좋으면 다른 회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금의 우선순위를 인정해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계육 협동조합 설립

- 육계사육농가들은 대개 지역적으로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즉 호남지역은 하림, 동우, 충청도는 체리부로 등과 같이 계약을 맺어 사육하고 있다. 계열사를 옮기고 싶더라도 거리상 쉽게 옮길 수가 없다. 계약농가 중 일부가 이동하지만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옮기고 싶어도 대안이 별로 없다는 면도 있다.
- 그리고 계열사들의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가이익을 특별히 고려하는 기업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가 스스로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육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계열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개가 협동조합형태의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원래 미국의 육계 계열화도 협동조합방식이 계열화의 기업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충청도지역에서 육계조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건이 맞지 않아 소멸되어버렸다. 그때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고 육계 농가들의 경영의식도 부족하여 조합이 폐지되었지만 오늘의 현실에서는 육계농가 스스로 계육 조합을 설립해 불만한 여건 조성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럴 의욕이 없다면 계열사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계열사와 경쟁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계열사보다 더 경영을 잘 하려 노력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하느냐, 중앙회가 회원으로 받아주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거절하면 중앙회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중앙회는 조합결성보다는 현재의

목우촌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방안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는 기존계열사와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농가와 목우촌과의 관계가 다른 계열사와 농가와의 관계보다 농가에게 유리한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계육조합설립의 경우 농가가 출자하고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최근 축협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축가 스스로 농협다운 농협을 결성해 볼 만하다. 농협법의 테두리내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중앙회로부터의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도계장은 설립하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회원조합이 되는 경우 목우촌과 연계하고 축산물 판매분사, 농협유통, 농협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합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 판매는 중앙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고려해봄직 하다.

라. 표준 계약서

- 사육수수료 지급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제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 비슷한 점이 많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다. 최근에 계약서 작성의 문제보다는 계약 이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선 계약서가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 즉 갑·을은 상호간에 유리하게 작성하고 싶고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힘의 수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제적 현실이다. 따라서 서로가 각자 힘을 길러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조항을 정형화 할 수는 없고 주요 항목의 원칙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계약 내용이 당사자 간에 공정해야 하며 공평해야 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2) 독과점의 횡포, 즉 사육 수수료, 각종 인센티브 등의 결정에 독과점적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 3) 병아리 공급 시
 - 병아리 건강 상태 확인(필요 시 수의사 현지 확인)

- 덤의 수량 확정
 - 갑의 책임으로 보는 병아리 폐사의 경우와 을의 책임으로 보는 병아리 폐사의 경우를 열거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 4) 사료 공급 시 HACCP 인증을 받은 사료로서 사육 프로그램대로 했을 경우 계약 출하 체중 달성에 문제가 없는 사료이어야 한다.
 - 5) 사육농가의 평가지표가 명백하고 사육농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
 - 6) 병아리, 사료 이외의 자재 공급 가격을 분명히 하고 농가에게 부당하게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 7) 계약 변경 시 농가 협의체는 변호사, 육계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변경 시에도 협의할 수 있게 한다.
 - 8) 서면계약 종료 통보 일시를 분명히 하고 농가가 육계 사육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 9) 분쟁 발생 시 중재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조문화 한다.

7. 상호협력 방안

- 1) 중재 위원회 설립운영

가. 중재 위원회의 필요성

- 육계산업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이 깊어져도 이를 중재할 만한 공적인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육계 계열화 현장의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가칭 육계산업 분쟁 중재 위원회 같은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육계 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나. 중재 위원회의 기능

- 육계 계약 사육을 진행하는 갑·을 간의 계약 이행을 보장함에 있다.
- 구성은 육계 전문가로 편성을 하며 관계 공무원과 법률가(변호사)와 가금 전문 수의사 등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축산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농식품부가 운영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축산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한다.
- 계약 시 당사자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계약 조문을 명문화 한다.

다. 중재위원회의 입법사례

- 입법 자료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과 중재위와 비슷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3조 등이 있다.

2) 농가 협의회 활성화 방안

- 농가 협의회는 계열화 업체와 농가의 대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변경 및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자발적인 조직이다.
- 기존의 업체들마다 형태와 이름은 달라도 갑과 을 간에 협의를 하고 대화하는 기관은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으로 가기 전에 양자 간에 공존 공영정신으로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별로 사육 농가로 구성되며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회원들은 일정 회비를 납부하고 계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방안

열화 업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정기적인 만남으로 하면 될 것이다.

- 사육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 계열사는 매년 회사 경영실적을 농가협의체에 설명한다.

3) 계열화 평가단 운영 방안

- 매년 또는 필요한 때에는 계열화 업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 육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수의사,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 따라서 매년 또는 필요시 계열화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업체와 육계 농가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계열화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 축산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농식품부가 운영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축산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한다.

8. 계육 대표조직 검토

1) 정책 목표

-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 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조직으로,
-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수급 조절, 품질관리,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 계육 대표조직 구성 방안

- 하나의 법인으로서 대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육협회의 계열회사와 계열회사의 계열농가가 양계협회의 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 협회와 농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대표조직은 시작부터 단일조직으로 출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 조직을 대표조직으로 지정하여 육성한다든가, 신규로

설립 한다든가 몇 개의 조직을 통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많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존 조직 중에서 정책 목표 수행에 가장 가까운 조직을 선정하여 그 조직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향후의 대표조직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때 대표조직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을 선정하여 그 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먼저 조직을 선정하기에 앞서 농림수산물 품부가 작성한 자료(2009. 8. 27)에 의한 대표조직의 개념을 보면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산에서 소비 단계 전 과정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수급 조절,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대표조직의 요건으로는 생산자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이 구비되어야 하며 운영 기반 및 목적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50% 이상이란 생산자 회원의 생산량 또는 출하액이 전국 대비 50%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조직의 기능에 있어서도 생산에서 유통, 가공·수출, 연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기단계에는 출하조절이나 소비촉진 홍보 등을 위주로 추진하지만 발전단계에 이르러서는 마케팅 주체로서 생산성이나 연구 등을 종합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조직의 형태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비영리 법인이거나 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대표조직)과 영리법인(자회사)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자회사는 시장개척, 품질관리 및 판매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품목 대표 조직은 이상과 같은 개념, 요건, 기능 및 조직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이 같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육계 대표조직은 육계농가, 도계업체, 부화업체, 종계업체(원종계)가 상호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 육계산업 내에서 교섭력이 가장 큰 조직이 우선적으로 대표조직 역할을 하면서 업계 전체를 수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 계육협회, 양계협회, 육계자조금위원회, 농협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면과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 될 것이다. 